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

©세계성공회협의회, 2019

이 문서는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UK)>에 의한 사용 이외에, 세계성공회사무총장의 허가 서한 없이 어떤 부분도 출판과 인쇄를 통한 재생산이 금지되어 있다.

이 문서에 대한 문의 :

The secretary General of Anglican Communion
St. Andrew's House
16 Tavistock Crescent
London W11 1AP
United Kingdom

Secretary.general@anglicancommunion.org

| 차례 |

발간사: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요?	4
서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7
1. 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기	13
2. 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29
3. 사목의 실천 기준을 채택하고 장려하기	39
4. 사목 적합성 심사하기	45
5. 안전한 교회 문화 증진하기	51
붙임1 용어집	62
붙임2 현장	82
붙임3 의정서	84

발간사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요?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대한성공회 의장 주교 이경호 베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레위 19:2)

교회는 거룩하신 하느님을 본받아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주 다양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2천 년 동안 지역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구조, 예배와 전례, 교리와 신학, 그리고 문화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빠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종교로 추락하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과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목의 내용을 새롭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차별당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차별과 편견이 없는 교회, 취약한 성인이 환대와 배려를 받는 교회, 다양한 학대로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교회, 힘이나 위력에 의해 성적인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여성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서울교구는 4월에 영국성공회의 <성직자 직무에 관한 안내>를 번역하여 전국의 모든 성직자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성직자 직무에 관한 안내>는 영국성공회의 사제들이 어떤 원칙과 지침 안에서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써 지금 우리의 사목활동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성공회에서 마련한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대한성공회의 모든 교회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 번역을 도운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은 모든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 리더 그룹 그리고 모든 신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성인식 변화, 교회 문화 변화, 그리고 제도적인 구조와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직자와 신자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목적

2019년 세계성공회협의회(ACC-17)는 세계성공회의 모든 관구가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성공회 관구의 모든 사람 특히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관구마다 가지고 있던 안전한 교회 운동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어느 관구에서는 ‘*안전한 교회*’(Safe Church) 실천이라고도 하고 다른 관구에서는 ‘*안전보호*’(Safeguarding)를 실천한다고도 해왔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을 더욱 격려하고 향상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회 사목자*(church workers)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고, 현재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고자 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을 다 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헌장(Charter)
- 세계성공회 관구 사이의 사목적합성 정보공개를 위한 의정서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행동양식과 실천사항을 준수한다면 세계성공회 교회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모든 이에게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 교회 사목자는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 폭력 피해자는 정당성을 입증받는다.
- 폭력을 저지른 교회 사목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교회 지도자는 폭력 사실을 은폐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회’에서 수행되는 *사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회 사목자는 *교회공동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영적 조언과 지지,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교회 사목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신학적 근거

‘현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서는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어린이와 모든 취약한 성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예수님의 사목을 인지하고 확증하고 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018년 3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아동 성학대에 관한 특별조사〉를 앞두고 ‘안전보호’(Safeguarding) 신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전보호 신학은 이러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창조적 사랑의 극치를 보이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하는 모범은 우리가 하느님으로 알고 믿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취하시고 분쟁 지역에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 부모의 보호를 받으셨고 이웃도 그분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성장했고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 말씀하시며 매우 분명하게 약

자를 해친 자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하셨다는 것
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언급한 성서의 세 가지 주제, 모든 사람
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약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의 책임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의 토대이다. 각 관구에서 이 가이드라인
을 실행할 때 교회의 사명에는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안전한 교회’ 또는 ‘안전보호’의
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형식

이 가이드라인은 다섯 장과 세 개의 별첨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헌장’의 다섯 가지 조항과 연관되
어 있으며 각 장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헌장에서 관련 조항 인용
2. 헌장 조항이 나오기까지의 배경 지식 설명
3. 헌장 조항에 대한 실천사항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별첨 1〉은 핵심 용어를 모은 문서이다. 이 핵심 용어는 서문과 1장에서 5장까지 처음 나올 때마다 기울임체로 표시되어 있다. 〈별첨 2〉는 ‘헌장’이고, 〈별첨 3〉은 ‘의정서’이다.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모두 ‘헌장’에 나오는 용어를 따랐다.

- 헌장은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인데 여기서는 ‘돌봄’(care)으로 줄여서 쓰고 있다.
- ‘지역교회(전도구)와 교회 기관’(parish and church organization)은 ‘교회공동체’(church communities)로 바꾸었다.
- ‘성직자와 그 밖의 교회 담당자’(clergy and other church personnel)는 ‘교회 사목자’(church workers)로 바꾸었다.
- ‘목회적 사목’(pastoral ministry)은 ‘사목’(ministry)으로 바꾸었다.
- ‘목회적 지원’(pastoral support)는 ‘지원’(support)으로 바꾸었다.

교회 사목자라 함은, 성직자나 평신도 사목자를 가리킨다. 일부 관구에서는 ‘목회적’(pastoral)이라는 단어는 성직자가 수행하는 돌봄, 사목,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혼동을

막고자 ‘돌봄’, ‘사목’, ‘지원’이라는 단어는 교회 사목자의 행위를 서술할 때 사용된다.

실행

각 관구는 가이드라인을 실현할 윤리강령과 적절한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구는 관구 차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도 있고 각 교구의 실행을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장에 알맞은 수준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규칙과 정책은 교회법 분야와 사목과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구나 교구의 규칙과 정책 등에서 쓰이는 용어와 비교하여 바뀔 수 있다.

규칙과 정책은 한번 채택되고 나면 관구의 모든 곳에서 꾸준히 알려지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1장

폭력¹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기

현장 조항 1.

폭력이 발생한 경우의 사목적 지원

우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교회와 교회 기관을 위해 사목적인 지원을 한다.

- ㄱ. 인내와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과 염려를 경청한다.
- ㄴ. 영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사목적 돌봄을 제공한다.

¹ 원문에서는 'abuse'라고 사용하고 있어 학대라는 번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국내 상황에서 폭력을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폭력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 영적, 정서적 등의 경우 학대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배경 지식

폭력의 본질

폭력 행위는 가정과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발생하며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한다. 폭력 행위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동이며 위해를 가할 의도로 행하는 행위와 타인을 위협한 상황에 빠뜨리는 행위까지를 가리킨다. 폭력 행위 유형에는 *괴롭힘, 은폐, 사이버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폭력, 젠더 기반 폭력, 회롱, 방임, 신체적 폭력, 성폭력, 영적 학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폭력에 관한 용어 설명은 〈별첨 1. 용어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폭력을 당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학대는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라고 일컫는다.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족 관계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흔히 ‘친족 간 폭력’ 또는 ‘가정 폭력’이라고 한다.

폭력이 발생할 때 한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영적 학대와 다른 유형의 폭력

이 동반될 수 있다. 때로 *교회 사목자*는 영적 권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폭력 사실을 들추어내면 하느님의 벌을 받는다거나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 때문에 종종 발생하며 지속된다. 조직과 교회공동체에는 침묵의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밝히기 두려워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폭력 사실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과 교회의 지도자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때로 교회 사목자가 교회에서 다른 사목자나 교회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여 타인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폭력이 발생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적 요소가 작용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믿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표현이었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비난해 자신의 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축소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종종 상습

적인 가해자이다.

다양한 사회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 때문에 어떠한 경우 취약한 성인의 특징이 폭력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가난, 인종, 성적 지향, 젠더(성별),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 등이 그것이다. 취약성은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때로 어떤 관구에서 폭력의 가해자로 알려지거나 의심받는 사목자가 다른 관구, 관구 내의 교구, 혹은 다른 교회 교단으로 이동할 때 교회 당국에 폭력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교회의 사목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행은 이 사람이 새로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폭력이 불러일으키는 해로운 영향

폭력 피해 당사자나 피해 당사자 주변인¹이 경험한 유해한

1 피해 당사자 주변인(secondary victim) 원문에서 사용된 ‘secondary victim’은 ‘2차 피해자’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차 피해’와 혼용될 수 우려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받는 영향을 ‘피해’로 호명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원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 당사자 주변인’이라고 번역했다.

상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경험, 폭력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경험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심각하게 파괴적일 수 있다. 피해 당사자 중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다. 남성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 한 사람의 피해자와 연관된 피해 당사자 주변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가족, 교회의 다른 사목자, 신자들 또한 피해 당사자 주변인들이다.

폭력이 불러일으키는 해로운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밀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폭력의 지속 기간이 어느 만큼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의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폭력의 공격성 정도 또는 폭력이 행해질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힘의 정도가 부가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와 피해 당사자 주변인은 폭력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보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는 유해한 정서적·심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

- 자신이 무가치해서 또는 사랑스럽지 못하다거나 환영받지 못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여기거나 또는 폭력의 ‘경고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수치심
- 스스로 견뎌내지 못한다는 무력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회 당국자, 교회 사목자에게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분노를 보인다.
- 거절당하거나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도 주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지나치게 경계하게 된다.
- 조직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 권위 있는 인물에게 타협적으로 순응한다.
- 타인을 돌보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실패하는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진다.

피해자가 겪는 영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폭력을 당하는 동안 침묵한 하느님이 잔인하다거나 무능

하고 무정한 분이라고 믿는다.

-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다.
-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분노한다.
- 아버지와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희생자에게는 자신이 아는 아버지(father)라고는 집안의 실제 아버지이거나 자신을 저버리고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한 남성 성직자(father)이다.

- 사랑, 신뢰, 희망, 신앙이 왜곡되는 일을 겪는 바람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교회 지도자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피해자가 겪는 폭력의 해로운 결과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도 그 해악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압도적인 슬픔과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 피해 당사자 주변인들이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는데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신뢰는 없다고 느끼며 폭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비밀주의, 낙인찍기,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로 이들이 교회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거나 가해자 편을 드는 사람과 피해자 편을 드는 사람으로 나뉘는 바람에

교회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피해자 돌봄

교회에서 피해자를 돌볼 때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피해자는 폭력이 일어난 공동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떠나고 만다. 교회는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언제든지 돌봄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어떤 피해자는 교회공동체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이들은 폭력의 해로운 결과들 때문에 힘들게 투쟁하며 도움을 찾고 있다. 때때로 폭력을 비밀로 지키고 있는 경우, 이들은 교회공동체에 폭력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워하면서 계속 침묵을 유지하느라 고통에 시달린다. 때로는 폭력 사실이 교회에 알려진 경우에도 교회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교회는 피해 당사자나 피해 당사자 주변인 모두가 폭력 사실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곳, 폭력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치유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교회공동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조언과 여러 가지 돌봄을 제공해야만

한다. 피해자는 전문적인 케어나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용서

용서는 피해자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목하는 교회 사목자에게도 어려운 문제이다.

피해자는 종종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압박에 짓눌리곤 한다. 그 압박은 다음과 같다.

- 외부의 압박 : 누군가 ‘지난 일이니 덮어두자’, ‘용서하고 잊어버려’, ‘용서하고 너의 삶을 살아야지’, ‘네가 용서하고 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라고 말할 때
- 내면의 압박 :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피해자는 교회 사목자로부터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와 다시 좋은 관계를 수립하라는 압박은 또 다른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안 들거나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용서에 대한 어떤 요구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예컨대, 가해자가 아무 회개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죽었거나, 또는 마주칠 일이 없을 때이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다층적인 일이며 본질적으로 복잡한 일이고, 피해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냥 한번 하고 마는 전혀 단순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연장되는 여러 단계의 기간을 거쳐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때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성서에는 용서를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흔히들 ‘회개’라고 한다.

- 고백. 자신의 폭력이 야기한 유해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 사실과 그 유해한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과하는 것.
- 뉘우침과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 가해자가 폭력 행위에 모든 책임을 느끼고 이후 따라올 어떠한 조치도 기꺼

이 감내하는 것, 행정 기관에 고발당하는 것이나, 교회 내 징계 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 배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적합하게 배상하는 것.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성직자는 하느님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대화를 통해서 용서할지 혹은 대면하지 않고 용서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해자가 하느님 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작게 느낀다거나 가해자를 용서했다거나 가해사실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교회는 (용서받은) 가해자를 사목직에 임명하거나 혹은 복직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가해자에게 아동이나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돌보도록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가해자가 폭력 사실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가해자는 화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거나,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 용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피해 당사자나 피해 당사자 주변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사목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 잘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사목 지원은 이러한 피해자 돌봄이 지속 가능한 것이 되도록 돕는 일이다.

가이드라인

피해자 돌봄

1-1. 각 관구는 피해자가 교회 사목자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 주변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와 같은 성(性)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준이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1-2. 충분한 인력이 전문적으로 훈련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교회공동체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여성과 남성 각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교회공동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여성이나 남성이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에 적합한 사람이란 적절한 사목의 경계선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만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폭력의 피해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된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받는 사람은 성직자이거나 평신도 사목자일 것이다. 훈련받은 사람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1-3. 피해자 돌봄 훈련은 다음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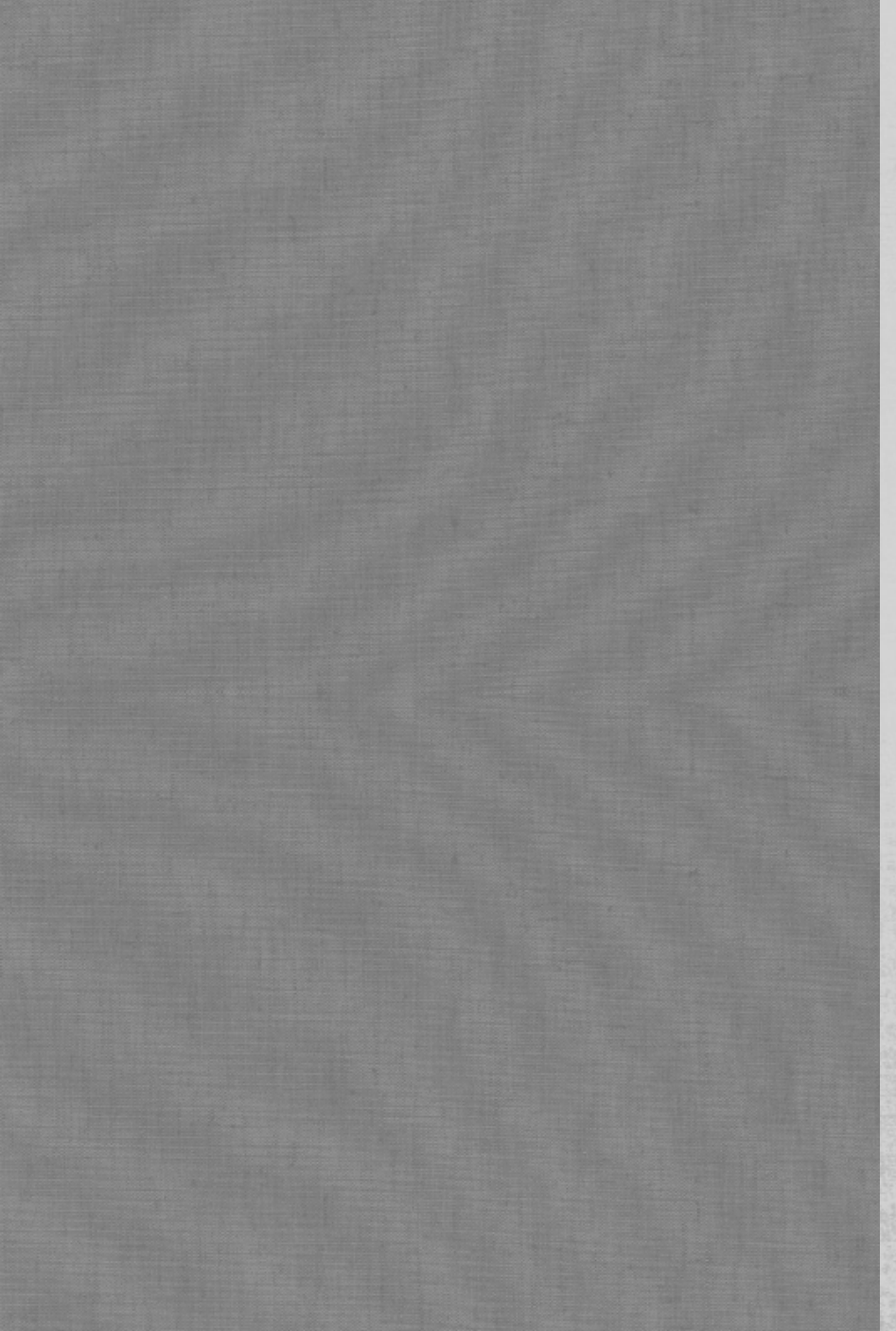
- 폭력의 맥락에서 본 돌봄의 신학
- 폭력의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주의력
- 공감과 인내심과 연민을 가지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중요성
- 피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 주변인이 받은 해로운 영향
- 비밀의 유지와 그 한계 설정의 중요성
- 폭력의 사실을 폭로했을 때의 적절한 대응
- 돌봄 인력의 역할 한계 설정: 예를 들어, 피해자의 요구 존중하기, 전문적 케어 연계는 강제하지 않기
- 교회가 피해자에게 전문적 케어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등) 또는 피해자 지원 조직(지지 그룹)에 대한 연계의 상황과 시기.
- 용서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피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강요받을 때 피해자에게 끼치는 유해한 결과 인식.

-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돌봄 유형 인식: 예를 들어 피해자를 위한 복지혜택에 대한 정기적 조사, 기도 후원, 재정적 도움, 안전한 새 거주지 마련, 법률적 혹은 형사사건 관련 행정 기관에 보고서 제출 협력.

1-4. 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사람을 위한 교육은 3~5년 주기로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1-5. 관구는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주변인을 돌보는 사람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 지원 인력은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교육과 훈련도 받고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성도 습득해야 한다. 이 지원시스템은 돌봄 인력과의 정기적 만남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이 돌봄을 제공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장

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현장 조항 2. 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

우리는 성직자나 교회 사목자가 관련된 폭력 혐의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한다.

- ㄱ. 교회 안에 신고절차를 공지한다.
- ㄴ. 신고인을 위한 사목적 돌봄을 마련한다.
- ㄷ. 성직자나 교회 사목자가 받는 폭력 혐의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후 사목 적합성을 심사한다.
- ㄹ. 이 일로 영향을 받는 지역 교회와 교회 기관을 지원한다.

배경 지식

폭력의 가해자에 의한 권력 및 권위 악용

*교회 사목자*는 자신의 역할과 지위로 인해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신뢰받는 위치에 있다. 사목자 가운데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적 방법으로 권력을 사용한다. 또 다른 이는 피해자의 저항을 굴복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 권력과 권위를 악용하는 교회 사목자는 그들에게 부여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교회 내 폭력 은폐

교회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사목자의 *혐의*를 덮어두려는 교회 지도자는 은폐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진실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 사건을 덮

아버리는 일에는 신고를 무시하거나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피신고인*(피고, 혐의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폭력 피해자는 교회가 그들의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때 더욱 깊이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교회 사목자에 의한 폭력 사실을 덮으려고 한 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교회의 명성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된다.

신고가 발생했을 때 혐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절차

교회 사목자를 상대로 신고가 발생한 경우 혐의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절차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 절차가 관구에 공지될 필요가 있다.

피해 당사자 중에는 보복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들어하는 이도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신고인* 특히 아동폭력 피해자는 실제 신고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폭력이 의심되어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신고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신고 내용이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사망했

을 때도, 신고의 진실성과 적합한 보상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피신고인이 폭력을 저질렀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향후 사목에 관한 적합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심사 내용에는 가해자가 현재 직책에 남아있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직책에 임명하기에는 적합한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심사 내용에는 그가 사목에 남는 것이 일시적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혹은 영구적으로 부적합한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부적합하다면 사목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적/자의 경우, 그가 성직을 지속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심사해야 한다.

신고 내용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고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신고 내용이 입증된 경우, 교회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할 때는 언제나 교회 지도

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단계별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 내용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신고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고 나서도 피신고인이 사목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교회공동체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책임성’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새로 발견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소통의 절차를 갖추면, 신고인, 피신고인, 교회, (필요하다면) 대중에게 이러한 조치사항이 정확하게 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신고로 영향을 받은 교회공동체 지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 주변인 그리고 피신고인 등과 관련된 교회공동체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 환멸을 경험한다. 때로는 교회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난다. 피신고인이 폭력을 저질렀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더욱 심해진다. 신고가 발생한 교회공동체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에는 적절한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이 정보 제공으로 신고인이 이중 피해를 당하거나 혐의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편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의심과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신고에 공정하게 대응하기

2-1. 각 관구는 신고에 공정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피해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정해진 사람에게 신고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수단
- 범죄가 의심되는 신고 내용이 접수된 경우, 교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보고하는 것 말고도 신고인이 *행정기관*에 폭력 사건을 알리는 것을 돕는 장치
- 신고인과 관련된 내부 고발인을 교회 사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 신고 내용을 다루는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신고인의 직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조치(피신고인이 현직에 있으면 피해자를 포함한 집단이 위협에 처하거나 교회의 명성에 손상을 입게 된다)를 하는 *교회 당국*을 수용해주는 태도
- 시간이 너무 지나 신고 내용을 공정하게 다루기 불가능한 형편일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신고 내용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

- 신고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제외하고 신고 내용과 신고인에 관해 피신고인에게 공개하는 것
-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에 관해 대답할 기회를 주는 것
- 피신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밝힐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사람 또는 그룹을 공식적 절차로 명시하는 것
- 피신고인이 혐의를 시인하거나 사실로 밝혀진 경우, 피신고인의 사목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결정하고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여지게 하는 절차
- 피신고인의 사목 적합성 심사에 참고해야 할 교회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 보관
-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피신고인의 혐의를 벗겨주는 것
- 어느 정도의 정보를 누구에게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모든 기밀 유지
-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신고인, 피신고인, 교회, 필요하다면 대중에게 공지하고 소통하는 것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지원

2-2. 각 관구는 신고 처리 과정 중이거나 그 이후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아야 하며 훈련받은 사실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훈련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이야기를 공감, 인내, 연민으로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
- 폭력의 본질과 피해자가 받는 영향
-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예컨대, 신고 사항을 다루는 절차, 신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면담에 동행, 혐의 사실 여부가 결정될 때 모든 이야기 경청)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결정에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영향을 받은 교회공동체 지원

2-3. 각 관구는 신고와 그 결과로 영향을 받은 교회공동체

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관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폭력 사건 신고와 그에 따른 결과가 사람들과 교회공동체에 주는 충격
-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교회공동체에 폭력 신고 내용과 그 결과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 폭력 신고와 그 결과에 따라 영향받는 교회공동체와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촉진하는 전략

교회 사목자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3장

사목의 실천 기준을 채택하고 장려하기

현장 조항 3. 사목 활동의 실천

우리는 성직자나 교회 사목자의 사목 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준을 채택하고 장려한다.

배경 지식

교회 사목

사목은 교회공동체에서 필요한 때에 영적 조언 및 지원, 교육, 상담, 돌봄과 도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다. 그러한 사목은 하나의 교회공동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행해질 수 있다. 교회 사목자는 그런 사목 관계에서 자신이 돌보는 이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항상 행동해야 한다.

사목 관계 내 권력 불균형

교회 사목자와 그들이 돌보는 사람과의 사목 관계에는 본래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교회 사목자는 다른 이에 대한 영적인 권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자원에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사목자는 사목 관계에서 언제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목 활동의 실천 기준으로서의 윤리 강령

사목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목자 윤리강령 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 사목자는 이 사목자 윤리강령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목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특히 다른 관구나 다른 교회 전통(다른 교단)에서 옮겨온 교회 사목자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사목자가 적합한 사목 활동 기준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사목자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훈련해야 한다.

교회 사목자를 위한 사목 지원의 중요성

교회 사목자에 대한 사목 지원 체계는 사목자의 윤리적 사목 실천을 확고히 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다른 사목자나 신자의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방안이다.

가이드라인

사목 활동을 위한 윤리강령

3-1. 각 관구는 교회 사목자가 준수해야 할 사목의 활동 실천 기준을 담은 윤리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이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은 실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 사목 관계의 본질과 그 관계에서 사목 대상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
- 사목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한계(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경우)
- 언어 사용, 몸짓과 이미지 사용, 기술 도구 사용, 회의·인터뷰·대화 등의 장소와 규칙을 포함하는 사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 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계를 포함한 사목 관계에서의 적절한 경계
- 아동, 청소년을 홀로 두거나 고립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아동, 청소년 사목
- 취약한 성인을 위한 사목

- 이미 판명됐거나 혐의를 받는 교회 사목자의 폭력 행위 사실을 교회 당국과 행정 기관에 보고하는 것

윤리강령 교육

3-2. 각 관구는 다음의 훈련 대상이 윤리강령을 충족시킬 만큼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부제 서품 전의 성직 후보자
- 임명되기 전의 교회 사목자(예외적인 경우 임명 후 3개월 이내), 임명 이후 3~5년 주기로 보수 교육할 것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한다.

사목 지원

3-3. 각 관구는 교회 사목자가 윤리적 사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성직자, 권한이 부여된 평신도, 임용된 평신도 사목자의 사목활동에 관한 슈퍼비전에는 가능한 한 멘토링, 전문적인

슈퍼비전, 동료 간의 지원, 사목적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다.

- 자원봉사자인 평신도 사목자의 경우, 그들의 사목에 대해서도 슈퍼비전을 포함시켜야 한다.

4장

사목 적합성 심사하기

현장 조항 4. 사목 적합성

우리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임명되거나
성직자로 서품 받는 사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과거 이력 조사’를 포함하는
정책을 세우고 절차를 실행한다.

배경 지식

‘과거 이력 조사’를 하지 않는 곳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

‘과거 이력 조사’를 하지 않으면 때로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한 이력이 있는 교회 사목자가 새로 임명을 받거나 성직자의 경우 서품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사목에서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폭력은 성직자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평신도 사목자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사목자가 다른 관구나 다른 교구, 또는 다른 교회 전통(다른 교단)에서 이동해왔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이력 조사’의 중요성

교회 사목 후보자의 사목 적합성 심사에 ‘과거 이력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거 이력 조사’의 목적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이 정보는 해당 인물이 교회 사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성직자가 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별되어야 한다. 평신도 사목자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과 만나는 사람

부터 먼저 ‘과거 이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 이력 조사는말로 교회 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과거의 행동은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가리키는 중요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관구 간 교회 사목자의 이동이 있을 때 양측 관구는 *의정서* (Protocol)대로 이행하여 ‘과거 이력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관구 안에서 다른 교구로 이동하는 경우, 교구 사이의 협력으로 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른 교회 전통(다른 교단)에서 옮겨오는 교회 사목자도 관구와 다른 교회 전통 사이의 협력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 요인 심사가 필요한 환경

과거에 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미래에 또 다른 사람에게 폭력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목자로서의 위험성을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품을 받거나 직책에 임명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심리학자와 같은 숙련된 전문가가 해당 위험을 심사해야 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서품을 받거나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이드라인

교회 사목자가 되고자 하는 후보자의 적합성 평가

4-1. 각 관구는 교회 사목 후보자의 '과거 이력 조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목자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하며 성직자의 경우, 서품 과정 전에 조사받아야 한다. 조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공개된 과거 폭력 행위에 대한 이력이 포함된 지원서 작성
- 신원 확인
-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지원자의 범죄 이력 확인서
- 임명권자나 그 대리인과의 면접
- 교회 또는 이전 직장의 기록 및 지원자를 잘 아는 이들에게서 수집한 자료
- 이전에 다른 관구, 다른 교구의 교회에서 권한이 부여된 교회 사목자로 일했다면, 또는 다른 교회 전통(다른 교단)에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의 경우라면, 사목 적합성 정보 공개 요청
- 성직 서품 후보자의 경우, 심리검사를 통해 타인의 안전

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심사한 결과

이상의 ‘과거 이력 조사’ 자료는 잘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4-2. 각 관구는 교회 사목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성직자의 경우 부제로 서품 받기 전에, 그들의 사목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심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후보자가 사목 할 대상과 그들의 취약성 고려
- ‘과거 이력 조사’로 얻은 정보 고려
- 과거 폭력의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다른 사람에게 폭력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심사

위의 모든 심사는 잘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43. 각 관구는 사목 적합성 정보를 포함한 ‘과거 이력 조사’ 기록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내부 기밀 사항으로 유지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공개한다.

-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 교회 사목자로부터 위험을 느끼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교회 사목자가 그 관구 내에서 사목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교회 사목자에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

사목 적합성에 관한 정보 공개

4.4. 각 관구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사목 적합성 정보에 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다른 관구, 관구 내 다른 교구, 다른 교회 전통(다른 교단)의 교회 사목자에 대한 사목 적합성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받는다.
- 사목 적합성 정보 공개가 불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 전통이나 다른 관구, 다른 교구에 교회 사목자에 관한 사목 적합성 정보를 즉각 제공한다.

5장

안전한 교회 문화 증진하기

현장 조항 5. 안전한 교회 문화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직자, 교회 봉사자, 참가자들이 폭력을 예방하도록 도와 교회와 교회 기관의 '안전 문화'를 증진한다.

배경 지식

교회 문화가 폭력에 기여해왔다

교회 문화의 일부는 *교회의 사목자가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문화적 측면은 갖가지 다른 방식으로 폭력 사건과 피해자를 침묵시켜왔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 예다.

- 교회 명성을 지키는 일을 피해자의 유익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아왔다.
- 교회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적절하게 책임을 지기보다는 용서와 연민을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 *성직자가 폭력 사건에 관련된 경우, 교권주의(성직자를 옹호하고 그들에 대한 경의를 통해 우위를 주장하는 것)가 폭력 발생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도 이에 대해 불충분하게* 대답해왔다.
- 폭력을 인지한 때에도 피해자가 해를 입은 형사사건 범죄로서의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실수로 간주해왔다.

비효과적인 교회 치리가 폭력을 뒷받침 해왔다

이러한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회의 구조나 치리 형태에 의해 강화된다.

- 교회 사목자 선발 심사 과정에서 과거 이력 조사와 훈련이 불충분하다.
- 폭력 신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교회 사목자의 향후 사목 적합성과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된다.
- 교회 지도자와 성직자의 목회적, 직무적 역할 간 이해관계의 갈등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 교회 지도자와 피신고인의 관계로 인한 중립성을 유지하지도 않았고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 교회 지도자가 폭력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다른 교회 공동체로 옮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 사실을 은폐했다.

교회에서 폭력 혐의를 받는 이들 때문에 받는 도전

폭력으로 판명됐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은 계속 교회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성폭력에 관련

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자로 선고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들에 대한 사목도 권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타인 특히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폭력 사실이 판명됐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은 돌봄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그룹 혹은 다른 그룹을 이끌거나, 음악 지휘, 성서 낭독, 기도 인도 등의 지도자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교회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지속하기

교회 안에서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회 사목자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성직자 양성과 지속적 계발 제도에는 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안전 문화 확립과 지속은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교회의 안전 문화와 지속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

행 과정은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규칙과 정책은 교회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신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의 유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평과 고발은 매번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실패한 부분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계속해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회가 모든 사람, 특히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을 보장해줄 것이다.

가이드라인

안전 문화 확립과 지속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교회 사목자의 양성과 지속적 계발

5-1. 각 관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교육을 통하여 교회 사목자의 양성과 지속적 계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신학
- 교회공동체에서 안전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지도력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
- 권력과 권위의 적절한 행사
- *사목적 관계*에서의 범주
- 교회 사목자에 의한 폭력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경우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
- 교회 사목자에 의한 폭력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안전한 사목 활동

- 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 제공
- 행정 기관에 폭력 사실 보고
-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영향과 그것에 영향받는 교회 공동체
- 안전한 교회 환경 조성 및 유지

안전 문화 확립과 지속을 위한 교회공동체 교육

5-2. 각 관구는 안전한 사목 수행과 폭력 방지를 위해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연령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학교, 혹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목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교육은 부모와 보호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취약한 성인에게 사목을 제공하는 조직의 경우, 가족과 보호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통해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에 헌신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취약한 성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다루어야 한다.

- 폭력의 본질과 결과

- 폭력의 신호 인식
- 성폭력의 경우 *길들이기* 유형
- 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실천방안
- 행정 기관과 *교회 당국*에 확인되거나 혐의가 있는 폭력 사실 보고

폭력으로 판명됐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목

5-3. 각 관구는 교회공동체 사람의 폭력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받는 경우, 그에 대한 사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사목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그 사람의 참여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 그 사람이 일정한 규제 하에 교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온 경우,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집단 혹은 안전의무에 대한 동의서와 같은 규제 사항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절차
- 그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심사 결

과가 나온 경우 대안적 사목 제공(교회 사목자에 의한 개별적인 사목)

- 그 사람이 교구 내 새로운 교회공동체나 관구 내 다른 교구 혹은 다른 교회 전통(다른 교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교회공동체 지도자에게 그 사람에 관한 정보 공개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 준수 모니터링

5-4. 각 관구는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최소 5년 주기로 독립적인 인물이 책임을 지고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정책을 보고서로 작성하기
- 관구나 교구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재하거나 공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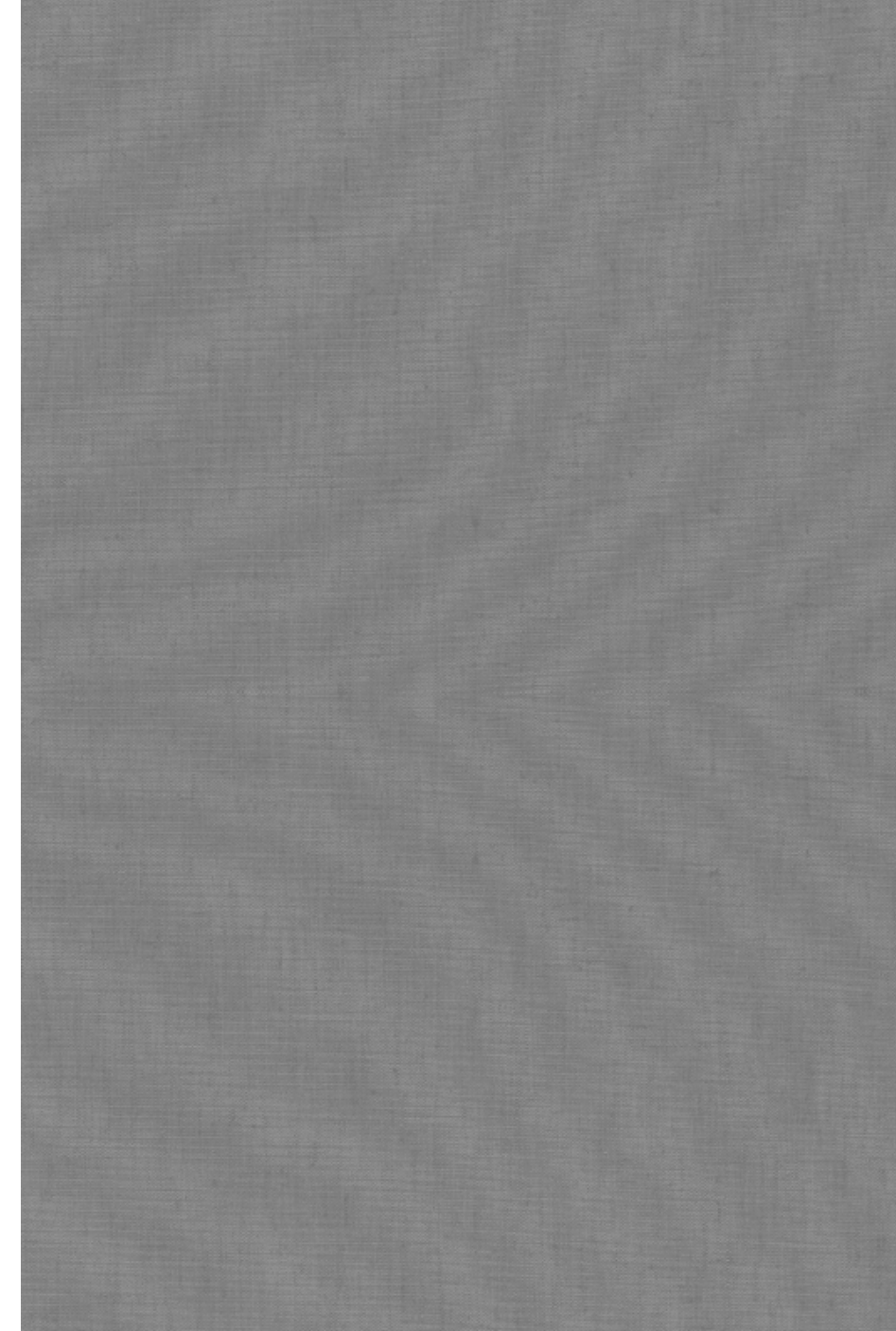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에 대한 검토

5-5. 각 관구는 이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주는 ‘안전한 교회

(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인물이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의 향상을 위한 타당성과 권고사항을 치리 기구에 최소 5년 주기로 보고하기
- ‘안전한 교회(safe church or safeguarding)’ 규칙과 정책의 효과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향상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치리 기구에 보고하기



붙임 1.

용어집

폭력(abuse)

폭력(학대)은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유발하는 행동을 말하며, 또는 위해를 가할 의도로 행하는 행위, 타인을 위협한 상황에 빠뜨리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폭력
- 따돌림
- 방임
- 사이버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폭력
- 정서적 학대
- 영적 학대
- 젠더 기반 폭력
- 폭력의 은폐

- 희롱(괴롭힘/ 협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한다.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족 관계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흔히 ‘가정 폭력’ 또는 ‘친족 간 폭력’이라고 한다.

동의 연령(age of consent)

동의 연령은 법적으로 한 개인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이 연령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

혐의(allegation)

혐의는 신고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이 부여된(authorized)

‘권한이 부여된’은 어떤 자격이나 유사한 권위에 의해 인정받

고 있음을 가리킨다.

괴롭힘(bullying)

괴롭힘은 교회 사목자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불합리한 행위(예를 들면, 대상자를 희생시키거나, 경멸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를 저지르는 것이며, 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의도적 행위이다.

- 타인의 외모, 살아가는 방식, 배경, 능력에 대해 경멸하거나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말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
-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경우
-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나 빈정거리는 말을 퍼뜨리거나 타인의 성과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 누군가의 합법적인 의견이나 요구를 묵살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누군가를 불합리하게 무시하거나 정보나 행위로부터 배제하는 경우
-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누군가를 만지는 경우
-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대상으로 혐오하는 행동이나

짓곳은 말로 장난을 치는 경우

- 불쾌감을 주거나 공격적인 문서 혹은 시각적 자료를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여기에 교회 사목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누군가의 신념, 의견, 행위에 정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한 경우
- 해당 인물이나 관련된 사람, 그리고 기타 인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적당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제공한 경우
- 합리적인 수행 목적, 기준, 마감 시한을 설정한 경우
- 불만족스러운 성취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고 건설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적법하게 징계 조치한 경우

‘사이버 괴롭힘(bullying)’은 문자나 전자 우편을 보내는 것과 같이 기술을 이용한 괴롭힘을 말한다.

헌장(Charter)

헌장은 세계성공회협의회(ACC)가 2012년에 통과시킨 결의문 15-09에 따라 채택한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헌장' *Charter for the Safety of People within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 '을 말한다. 내용은 <붙임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child)

아동은 법률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일부 국가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하는데, 아동은 만 16세 미만이다.

교회 당국(church authority)

교회 당국은 교회 사목자를 서품, 인준, 선출, 임명, 사임시키고, 중단할 권위가 있는 관구장, 주교 혹은 기구를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hild pornography)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행위나 성관계에 연관된 아동이나오는 영상물, 인쇄물, 전자 데이터, 컴퓨터 이미지, 기타 여러

묘사를 포함한다.

교회공동체(church community)

교회공동체는 사목이 수행되는 지역교회(관할구)나 교회 기관을 의미한다.

교회 사목자(church workers)

교회 사목자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목자 모두를 가리킨다.

성직자(clergy)

성직자는 주교, 사제, 부제를 가리킨다.

교권주의(clericalism)

교권주의는 성직자를 옹호하고 성직자에 대한 경의로 우위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인(complainant)

신고인은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

여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신고(claim)

신고는 교회 사목자의 폭력 사실을 제소하는 것이다.

폭력의 은폐(concealment of abuse)

폭력의 은폐는 교회 당국이나 행정 기관이 확인했거나 의심하는 교회 사목자의 폭력 사실을 합리적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 기관(civil authority)

행정 기관은 이미 확인되었거나 의심스러운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고해야 하는 경찰이나 기타 기관을 가리킨다.

사이버 폭력(cyber abuse)

사이버 폭력은 교회 사목자가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한 개인을 위협하는 것과 관련된다. 채팅방, 사회관계망(SNS), 전자우편, 메시지앱, 메시지보드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한다. ‘사이버 괴롭힘(bullying)’, ‘사이버 스토킹’, ‘이미지를 이용한 폭력’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는 교회 사목자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만큼의 고통을 주거나 그와 유사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타인의 외모, 살아가는 방식, 배경, 능력에 대해 경멸하거나 비하하고 하찮게 만드는 말이나 농담, 또는 동작을 하는 경우
- 한 개인을 모욕 혹은 경멸하는 말을 사용하여 창피를 주는 행위
- 한 개인을 협박, 조종, 위협하거나 겁주는 경우

교회 사목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누군가의 신념, 의견, 행위에 정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한 경우

- 해당 인물이나 관련된 사람, 그리고 기타 인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적당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제공한 경우
- 합리적인 수행 목적, 기준, 마감 시한을 설정한 경우
- 적법하게 징계 조치한 경우

정서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경제적 폭력(financial abuse)

경제적 폭력은 교회 사목자가 임금, 급여 등을 넘어서 사목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혹은 가족을 위한 재정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경우에 발생한다. 절도가 포함된 경우는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사목 관계인 사람에게 금전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젠더 기반 폭력은 해로운 성별 규범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근거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다. 본질적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 성폭

력일 수 있고, 거부나 수용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가한다.

길들이기(grooming)

길들이기는 교회 사목자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성인,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고의적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한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교회 사목자는 그들과의 성행위를 목적으로 그들을 길들이고 그들의 부모와 가족, 혹은 교회의 다른 사목자에게 접근한다. 대상이 성인인 경우, 교회 사목자는 그들과의 성행위를 목적으로 그들을 길들이고 그들의 가족과 부모, 교회의 다른 사목자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길들이기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이나 성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

희롱(괴롭힘/협오)(harassment)

희롱은 교회 사목자가 의도가 있든 없든 좋은 감정을 가진 타인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하찮게 여기는 말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에 발생한다. 일회성 사건이든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연속적 사건이든 모두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회롱에 해당한다.

-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계속해서 부당하게 소리치는 행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몸짓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해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는 행위
-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 포스터, 낙서, 문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전화, 전자 우편, 문자 등의 형태로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특정인을 스토킹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은 문자나 전자 우편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괴롭힘의 한 형태이다.

이미지를 이용한 폭력(image-based abuse)

이미지를 이용한 폭력은 교회 사목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성

행위, 신체노출 또는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배포한 경우 발생한다. 해당 이미지는 원본이나 편집된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다. 기술이 위와 같은 성적 이미지 배포에 이용된 경우는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 교회 사목자가 타인의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호의나 금전 등을 얻어내려고 하거나, 온라인에서 사진을 삭제해주겠다고 금전, 추가적인 이미지, 성적 호의를 강요한 경우 성착취(sextortion)라고 한다.

평신도 사목자(lay worker)

평신도 사목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 교구에서 주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사람
- 교회공동체에 의해 혹은 교회공동체를 대표하여 임명되고, 선발되거나 고용된 사람
- 자원봉사자로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사목을 수행하는 사람

사목(ministry)

사목은 교회 사목자가 타인의 평안을 위한 책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나 관련된 업무를 가리킨다.

사목 관계(ministry relationship)

사목 관계는 사목을 목적으로 한 교회 사목자와의 관계를 가리킨다.

사목 적합성 정보(ministry suitability information)

사목 적합성 정보는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사목자의 행위나 성행위에 관련된 규칙을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적 행위나 교회 사목자에 대한 관구의 규칙을 어긴 과거의 사실에 관한 확인 여부, 만약 있다면 그것의 실체를 밝혀줄 문서 자료를 의미한다.

방임(neglect)

방임은 타인의 안녕에 책임이 있는 교회 사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삶의 기초적 필수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발생한다. 방임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포함한다.

- 음식
- 의류

- 거주지
- 위생
- 교육
- 관리 감독과 안전
- 의료 보호

방임은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 주간 보호 시설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 및 주간 보호 시설, 그리고 학교 내 기숙사, 병원 등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 발생한다.

신체적 폭력(physical abuse)

신체적 폭력은 교회 사목자가 타인에게 의도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주고자 위력이나 위협을 사용한 경우,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에 발생한다. 신체적 폭력은 다음과 같다.

- 손으로 때리는 행위(slapping)
-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punching)

-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hitting)
- 몸을 흔드는 행위(shaking)
- 목을 졸라 숨 막히게 하는 행위(choking)
- 발로 차는 행위(kicking)
- 불에 태우는 행위(burning)
- 밀치는 행위(shoving)
-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grabbing)

아동 체벌이 합법적인 지역이라면, 체벌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primary victim)

피해 당사자는 폭력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의정서(protocol)

의정서는 2016년에 통과된 세계성공회협의회 '결의문 16-27'에서 언급된 '세계성공회 관구들 사이의 사목적합성 정보공개를 위한 의정서'를 가리킨다.

관구(province)

관구는 세계성공회협의회 소속 교회를 의미한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접 관할 구역인 국가 혹은 지역교회는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위해 관구로 간주된다.

피신고인(respondent)

피신고인은 신고를 당한 교회 사목자를 가리킨다.

안전한 교회 또는 안전보호(Safe church or Safeguarding)

안전한 교회 또는 안전보호는 교회 내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을 가리킨다.

피해 당사자 주변인(secondary victim)

피해 당사자 주변인은 피해 당사자의 폭력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해 당사자나 폭력 가해자의 가족, 교회의 다른 사목자, 신자들일 수 있다.

성폭력(sexual abuse)

성폭력은 교회 사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련되었을 때 발생한다.

- 길들이기
- 이미지를 이용한 폭력
- 성폭행
- 성착취
- 성희롱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소지, 생산, 배포

성폭행(sexual assault)

성폭행은 교회 사목자가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협하여 의도적으로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상대가 동의하더라도 그러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그 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성행위를 말한다. 동의 연령 미만인 아동이나 그들을 대신하여 어떤 성인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강간
- 성적으로 타인을 만지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에게 성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협박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성착취(sexual exploitation)

성착취는 성인이나 동의 연령 이상의 아동들과 사목 관계를 이용한 교회 사목자가 그들을 유인하여 성행위로 끌어들이거나 동의하에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발생한다. 성인과 아동이 유인되었느냐, 자발적으로 시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희롱은 교회 사목자가 한 개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했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요청한 경우 발생한다. 일회적인 사건 혹은 장기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전화, 전자 우편, 문자, 소셜미디어 등의 다른 형태의 소통 방법을 이용한 사건도 포함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몸짓, 농담, 발언을 하는 경우
- 성적으로 외설적인 매체를 보여주는 경우

영적 학대(spiritual abuse)

영적 학대는 교회 사목자가 하느님, 신앙, 종교로 정당화시킨 행동 혹은 위협을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대할 때에 발생한다. 영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타인이나 다른 집단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고자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의를 얻고자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경우
- 교회공동체로부터 한 개인을 추방하는 경우
-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한 개인을 고립시키는 경우
- 성서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

취약한 성인은 지적 장애, 정신질환, 기타 장애, 연령이나 환경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가리킨다. 취약한 성인은 다음과 같은 성인을 포함한다.

- 집에서 방문 사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사고, 선천적 질병 등으로 한 명 이상의 보조 인력에 의존하는 사람
- 가족의 사망, 실직, 거주지 부재, 재산 부재 등으로 인한 재난이나 자연재해를 경험한 사람
- 가난, 전쟁이나 내전, 강제이주, 인종, 성적 지향, 성별 규범, 기타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폭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사라진 사람

청소년(young people)

청소년은 아동과 청년 사이의 간격을 두고자 하는 나라에서 아동도 아니고 성년에 이르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어떤 국가에서는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붙임 2.

헌장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헌장〉

Charter for the Safety of People within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

폭력이 발생한 경우의 사목적 지원

1. 우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교회와 교회 기관을 위해 사목적인 지원을 한다.

ㄱ. 인내와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과 염려를 경청한다.

ㄴ. 영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사목적 돌봄을 제공한다.

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

2. 우리는 성직자나 교회 사목자가 관련된 폭력 혐의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한다.

- ㄱ. 교회 안에 신고 절차를 공지한다.
- ㄴ. 신고인을 위한 사목적 돌봄을 마련한다.
- ㄷ. 성직자나 교회 사목자가 받는 폭력 혐의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후 사목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 ㄹ. 이 일로 영향을 받는 지역 교회와 교회 기관을 지원한다.

사목 활동의 실천

- 3. 우리는 성직자나 교회 사목자의 사목 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준을 채택하고 장려한다.

사목 적합성

- 4. 우리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임명되거나 성직자로 서품 받는 사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과거 이력 조사’를 포함하는 정책을 세우고 절차를 시행한다.

안전한 교회 문화

- 5.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직자, 교회 봉사자, 참가자들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교회와 교회 기관의 ‘안전 문화’를 증진한다.

붙임 3.

의정서

〈세계성공회 관구 사이의 사목 적합성 정보 공개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disclosure of ministry suitability information
between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

용어 정의

1. 이 의정서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과 같다.

심사 관구(Assessing province)는 해당 교회 사목자가 사목 활동을 위해 권한을 공인받아야 할 때 이를 심사하는 관구를 가리킨다.

공인 관구(Authorizing province)는 해당 교회 사목자가 사목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구의 교회 당국으로부터 공인되거나 이전에 공인받았던 하나의 관구 혹은 복수의 관구를 의미한다.

교회 당국(Church authority)은 공인 관구나 심사 관구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목 수행을 위해 공인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나 기구를 의미한다.

교회 사목자(Church workers)는 다음과 같은 성직자나 평신도 사목자를 가리킨다.

- ㄱ. 공인 관구의 교회 당국에 의해 사목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거나 이전에 부여받은 적이 있는 사람
- ㄴ. 심사 관구에서 공인된 사목을 수행하고자 지원한 사람이나 공인된 사목을 수행하는 지위나 직제의 임명을 위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

사목 적합성 정보(ministry suitability information)는 공인 관구의 교회 당국이 교회 사목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 ㄱ. 형사범죄위원회에 조사를 받거나 출석하여 혐의를 받고

범죄사실이 밝혀졌거나,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에 대한 도덕적 범죄 행위나 성행위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해서 공인 관구에서 정한 성직자와 평신도 사목자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규칙을 어기는 일이 있었는지 여부

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내용

관구(Province)는 전체 관구의 일부까지를 포함한다.

공인 관구가 사목 적합성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

1. 공인 관구는 교회 사목자에 관한 사목 적합성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 관구의 교회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ㄱ. 심사 관구의 교회 당국이 신청한 사목 적합성 정보의 공개 신청서를 공인 관구의 교회 당국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ㄴ. 해당 관구의 교회 당국은 심사 관구의 교회 당국에 사목 적합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심사 관구에서 공인된 사목을 위한 교회 사목자의 적합성 심사 체계

1. 심사 관구는 해당 관구 안에서 공인된 사목을 수행하려는 교회 사목자의 적합성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ㄱ. 해당 교회 당국은 공인 관구에 사목 적합성 정보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ㄴ. 공인 관구에 의한 사목 적합성 정보 공개 내용에 해당 교회 사목자가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안녕과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혹은 마칠 때까지 교회 당국이 그 사람의 사목 수행을 공인하지 않아야 한다.

ㄷ. 해당 교회 당국은 사목 적합성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 ①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 ② 교회 사목자로부터 위해를 입을 위험에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해당 교회 사목자가 관구 안에서 공인된 사목을 수행하는 것, 또는 해당 교회 사목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필수적인) 경우

안전한 교회

- 가이드라인

초판 발행 | 2021년 10월 30일

지은이 |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위원회

옮긴이 |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발행처 | 성공회출판사

발행인 | 김경문

편집인 | 양지우

디자인 | 민경준

출판등록 | 1963년 9월 11일 제1963-000001호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지하 101호

주문전화 | 02-736-6990

이메일 | skhnews21@gmail.com

한국어판 저작권 ©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성공회출판사는 대한성공회의 공식 출판사입니다.